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!

강북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조례명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입법예고기간 : 2015. 11. 27. ~ 2015. 12. 17.

다. 게재장소 :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

<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-1273호>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문 1부. 끝.

주무관	강학구	대외협력팀장	정춘현	행정지원과장	임재홍	행정관리국장	전결 11/24 고한석

협조자 주무관 송수연 법무팀장 代소병산

시행 행정지원과-102137 ( ) 접수 ( )

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 / http://www.gangbuk.go.kr

전화 02-901-6332 /전송 02-901-6319 / firefly77@gangbuk.go.kr / 대시민공개